

# 온돌바닥 단열재 공사

## 난방시공업 1~2종 업종이 수행해야

현행 건축법 제59조 설비규칙 21조의 단열재 규정에 있어서 온돌바닥 단열재 공사는 난방시공업 1~2종의 업무라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

동법에 의하면 난방을 요하는 건축물 최하층의 바닥인 경우 60mm이상 단열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값의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2층 이상 기준층은 40mm이상 단열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열관류율값의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수십만(무면허 및 면허업자 포함) 보일러설비 및 소규모주택 수리업자들은 저가 공사수주로 인하여 바닥단열재를 삭제 또는 은박지 매트를 단열재인양 바닥에 깔고 관행처럼 시공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무면허

업자의 부실공사를 목인한 집주인(원도급자)도 공동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1호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전국의 우리 회원들께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고 건축법에 의한 적합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무면허업자 및 난방시공업 1-2종 면허보유자들의 부실시공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행정당국에 고발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부(지회)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공사수주를 할 때 단열재 부실공사에 의한 난방 에너지낭비원인을 집주인에게 설명하여 주고 다른 업자들보다 차별화된 시공과 난방비 절약으로 집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에너지낭비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매년 약 370억달의 석유를 수입하여 이중 약 20%인 74억달러(우리돈으로 9조6천억)가 주택난방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닥단열재 부실공사로 인한 보일러 기름 약 30%인 2조8천억원이 방 바닥 밑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 내용으로 볼 때 우리 회원들의 임무는 막중하다.

주택 에너지절약의 최선봉에서 일선 현장을 지키는 업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규정에 의한 적합한 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낭비를 균일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집주인이 알던

모르던 간에 바닥단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영업을 추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발상으로 앞서가는 영업전략을 세워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 회원 스스로가 변하면서 각 분회를 중심으로 뚝뚝 뭉쳐 우리업종을 지키고, 정부를 상대로 그에 따른 우리의 권리를 법 테두리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항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만을 당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사무실 보유법 개정에서 모든 회원들께서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의 회원들을 조사하여 보니 1년 매출이 대략 5천만원 정도가 대다수이며, 매출액이 1억이 넘는 회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반면 5천만원 이하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 마진을 볼 때 연간 1천 5백만원 정도를 순수입으로 본다면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면서 극히 적은 수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에 1천만원이 넘

는 사무실을 보유하라는 규제는 우리 회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난방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새로운 규정

을 준수하며 회원간에 합심하여 선진기술 습득과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꿈을 이루는 세상-새천년의 한국"**  
**건설교통부**

취급 9-427-7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경제과	/전화 504-9051 /전송 503-6439 과장 최형기 사무관 임현정	/연호 503-6439 담당자 권오혁	kwob@sact.go.kr
--	---	-------------------------	-----------------


문서번호: 건경58070-1169  
시행일자: 2001.09.21 (3년)  
공개여부: (공 개)

수신 김양욱	전	시	지	시	시	시	시	시	시
참조	함	일	결	공	공	공	공	공	공
제목: 민원회신	수	자	계	발	발	발	발	발	발
	처	담	·	·	·	·	·	·	·
	리	당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과	자	발	발	발	발	발	발	발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자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귀하가 건설업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결의 요지
  - 주택의 온돌바닥 단열제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인지 여부 및 무등록 시공사의 처벌 규정
- 회신 내용
  - 귀 질의 사항이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기계설비업종 또는 난방시공업1,2종(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에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업종은 상규규정과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 등록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원·하수급자 포함)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장**



수신처: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6-13 옥천빌딩 3층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양욱

# 난방시공(1,2종) 등록 관련 자격증 비교

온수온돌기능사	인정양성과정기술사
<p>◎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능사로 그에 응한 대우를 받는다.</p> <p>◎ 온수온돌기능사는 난방시공업에 등록하지 않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 온수온돌기능사는 자격취득 후 법정교육이 면제된다.</p> <p>◎ 온수온돌기능사는 기계설비업의 기술능력이 인정된다.(별표참조)</p> <p>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u></p> <p><b>*국가기술자격법령 제10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b> ③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u>기술자격취득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한다.</u></p> <p>영 제30조(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관한 우대) ④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채용·보수·승진 등에 있어서 <u>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u></p>	<p>-기술능력난방시공업의 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써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가름할 수 있다.</p>

# 국가기술택약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제16(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2. 기계설비공사업	기계		보일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금속 회공 및 세라믹 건축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전기공사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보일러 용접 배관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접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건축 에너지 전기 안전관리	건축기계설비 가스	전기공사 가스	열관리 전기공사 가스	열관리 전기공사 가스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